

8 cm	사실조사원 증명서	
	발급번호	사 진
	주 소	
	성 명	
	생년월일	성별
위의 사람은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함.		
. . .		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(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) 인		
6cm		
60mm×80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		

주의사항

1.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2. 이 증표는 사실조사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3.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